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. 12. 5 선고 2024가단2959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28.

판 결 선 고 2024. 12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<1>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6,300,000원 및 2024. 7. 1.부터 가항 인도 완료일까지 월 42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<2> ‘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1항, 제3항

판사 노유경

별지